

# 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김 영 해 위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지역도시과장)	답변일자	2005년 12월 9일
회 의	제12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		

**【질의요지】**

- 2005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관련 공문사본

**【답변요지】**

" 별첨과 같음 "



평 창 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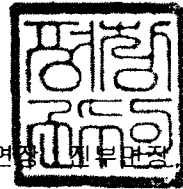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 목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 조사제출

1. 수도법 제5조(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) 및 동법제6조의2(주민지원사업)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(주민지원사업계획의수립절차등)동법시행령제11조의3(주민지원사업의종류)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조사코져 하니,
2. 위 관련법 및 붙임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희망사업을 조사, 붙임 보고서식에 의거 2005.03월1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대상사업 종류 1부.  
2.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대상사업 신청 조사보고서 1부. 끝.

평 창 군 수



수신자 평창읍장, 미탄면장, 방림면장, 대화면장, 봉평면장, 용평면장, 계부면장, 도암면장

부재대결 03/04

지방기능9급

김승영

수도관리담당

김서기

지역도시과장

김희우

협조자

시행 지역도시과-2593 (2005.03.07.) 접수

우 232-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-2

/ http://www.happy700.or.kr

전화 (033)330-2449 전송 033-330-2597 / romeo@happy700.or.kr / 공개

## 1. 지침의 목적과 기본방향

- 가. 이 지침의 목적은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안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음.
- 나. 지원사업추진 기본방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안에서의 소득증대·복지증진·육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 함은 물론,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동참 유도
- 다.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
## 2.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(법 제6조의2, 시행령 제11조의3 별표)

### 가. 지원대상

-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 주민 또는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·수산업에 종사하는 자
-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
### 나. 사업 시행기관

-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 3.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

- 가. 주민지원사업비는 보호구역별로 별도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관리청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사업비를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.
  - 보호구역별, 사업별로 국고지원비율을 맞춰야 한다.

나. 주민지원사업비는 인구수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지원비율은 보호구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
다.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선 지원하거나, 지원비율을 높게 하여야 한다.

#### 4. 주민지원사업의 종류(시행령 제11조의3 별표)

사업구분	세 부 사 업 내 역
소득증대사업	<p>가. 농기계구입·농기구수리시설·생산품공동저장소·농로·농업용수로·농업용양수장·농작물재배시설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</p> <p>나. 분·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, 톱밥 등 수분조절 재공동구입,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</p> <p>다.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·자재,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</p> <p>라.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매입 및 농산물저장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설치·운영지원(보호구역안 주민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.)</p> <p>마.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복지증진사업	<p>가. 상수도시설의 설치</p> <p>나. 수세식화장실,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 등오염물질정화시설과 우·오수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및 관리 지원</p>

사업 구분	세 부 사 업 내 역
복지증진 사업	<p>다. 진료소(주민건강진단 포함)·의료기구 및 구급차등 의료 관련시설의 설치·구입 및 관리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부조사업</p> <p>라. 노인회관·마을회관·가로등·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 강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</p> <p>마. 도서관·유치원·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및 관리의 지원</p> <p>바. 심야보일러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사업</p> <p>사. 주택의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</p> <p>아.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</p> <p>자.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한 생필품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의 지원</p> <p>차.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 복지증진(체육시설, 태양열 이용시설 등)과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육영사업	<p>가. 교육기자재, 도서의 공급</p> <p>나. 학자금·장학금지급</p> <p>다. 장학금적립</p> <p>라.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</p>
기타사업	<p>가.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</p> <p>나.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(토지매수 포함) 또는 전업에 관한 지원사업</p>





평 창 읍



수신자 평창군수  
(경유)

(지역도시과장)

제 목 평창읍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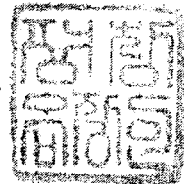
1. 지역도시과-2593(2005.03.07)호 관련하여 우리읍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 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단위 : 천원]

구 분	위 치	사 업 량	사업비
합 계	3개소	1,070m	129,700
콘크리트포장	여만리 과수원앞	B=3.50m L= 600m	78,000
아스콘덧씌우기	후평리 1반 진입로	B=4.0m L= 230m	25,300
	주진1리 진입로	B=4.0m L= 240m	26,400

붙임 : 사진대장 1부(별송). 끝.

평 창 읍 장



수신자

지방 기능9급

김복희 건설담당

학두재 평창읍장

03/18

강리권

협조자

#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

(보호구역명: 진부면 상수원보호구역)

사 업 명	복지증진사업 (마을회관)
장 소	진부면 상진부2리 200-1 ~ 200-3
토지매입예산액	200평 금오천만원정 (₩50,000,000)
마을회관건립예산액	30평 금이억원정 (₩200,000,000)
사 업 목 적	
마을총회. 농한기소득증대. 청소년학업증진. 종합행사장소. 어린이놀이방	

2005. 03. 14.

진부면 상진부2리 이 장 : 조 규 선 (인)  
 새마을지도자 : 이 명 인 (인)  
 1반장 : 홍 성 천 (인)  
 2반장 : 김 병 래 (인)  
 3반장 : 심 명 섭 (인)  
 4반장 : 함 종 주 (인)  
 5반장 : 장 일 순 (인)  
 6반장 : 이 창 희 (인)